

법률 업데이트 · 개인소득세

비교표 신 개인소득세법과 구 규정

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

급여소득: 2026 과세기간 전체에 적용

개인소득세법 제109/2025/QH15호 - 17년간 시행된 제04/2007/QH12호법을 대체

누진세율표: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

구 규정 — 2025 과세기간까지 적용

단계	월 과세소득	세율
1	500만동 이하	5%
2	500만~1,000만동	10%
3	1,000만~1,800만동	15%
4	1,800만~3,200만동	20%
5	3,200만~5,200만동	25%
6	5,200만~8,000만동	30%
7	8,000만동 초과	35%

신 규정 — 2026 과세기간부터 적용

단계	월 과세소득	세율
1	1,000만동 이하	5%
2	1,000만~3,000만동	10%
3	3,000만~6,000만동	20%
4	6,000만~1억동	30%
5	1억동 초과	35%

법적 근거: 04/2007/QH12호법 — 109/2025/QH15호법 제9조

가족공제: 900만 → 1,100만 → 1,550만동/월로 변화

법령	납세자	부양가족 1인당	적용 기간
2007년 개인소득세법(제19조, 26/2012/QH13호법 개정)	900만동/월 (연 1억800만동)	360만동/월	2013년 7월 1일부터
결의 제954/2020/UBTVQH14호	1,100만동/월 (연 1억3,200만동)	440만동/월	2020~2025 과세기간
2025년 개인소득세법(제10조)	1,550만동/월 (연 1억8,600만동)	620만동/월	2026 과세기간부터

법적 근거: 04/2007/QH12호법 제19조 — 결의 954/2020호 — 결의 110/2025호 — 109/2025/QH15호법 제10조

최초 도입: 의료비, 교육·훈련비 공제 인정

구 규정

- 가족공제, 의무보험료, 자유퇴직연금 외에는 자선·인도적 기부금만 공제 가능했음.

➡ 의료비, 교육·훈련비에 대한 공제는 없었음.

2026 과세기간부터

- **여전히** 자선·인도적 기부금 공제 인정(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까지 확대).
- **신규 추가:** 납세자 본인의 의료비, 교육·훈련비 지출 **및** 부양가족의 지출도 정부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공제됨(제11조 제2항).
- 조건: 적법한 영수증·증빙이 있어야 하며, 다른 재원에서 지급되지 않아야 함(제11조 제3항).

법적 근거: 04/2007/QH12호법 제20조 — 109/2025/QH15호법 제11조

참고: 납세자는 2026년부터 발생하는 학비, 진료비 등 공제 대상 지출에 대해 적법한 영수증·증빙을 보관하여 세금 신고 및 공제의 근거로 삼아야 함.

야간·초과근무 수당: 면세 범위 변경

구 규정

- 야간·초과근무 급여 중 정상근무 급여보다 초과 지급되는 부분만 면세.

➡ 초과 지급분만 면세되었고, 초과근무 기본급 부분은 과세 대상이었음.

예시: 정상근무 시간당 급여가 10만동, 평일 초과근무 시간당 급여가 15만동인 경우, 개인소득세 계산 시:

- 10만동: 과세.
- 5만동(초과 지급분): 면세.

2026 과세기간부터

- 야간근무·초과근무 급여 및 법정 미사용 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·보수 전액 면세.

➡ 신규정 은 더 이상 "초과 지급분"에 국한되지 않고 **전액** 위 급여·보수를 면세함. 또한 "미사용 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보수" 항목도 이번 면세 목록에 추가됨.

법적 근거: 04/2007/QH12호법 제4조 제9항 — 109/2025/QH15호법 제4조 제8항

개인사업자: 실질 이익 기준 과세

구 규정

- 매출액 기준 정률 과세: 상품유통 0.5%; 서비스·건설 2% (자산임대·대리 5%); 제조·운수 1.5%; 기타 사업 1%로,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.
- 비과세 매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함.

2026 과세기간부터

정부가 정하는 기준 미만 매출: 면세.

기준 초과 매출: 매출 기준 과세에서 소득(매출-비용) 기준 과세로 전환, 세율 15%~20%.

연 매출 30억동 이하: 선택 가능, 종전과 같이 매출 기준 정률 과세를 유지하거나 위와 같이 소득 기준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.
전자상거래, 디지털 플랫폼 및 부동산 임대에는 별도 규정 추가.

법적 근거: 04/2007/QH12호법 제10조 — 109/2025/QH15호법 제7조(09/2026/QH16호법 개정)

지분양도 및 증권: 새로운 과세 방식과 우대 조치 추가

구 규정

- 지분양도: 과세소득(양도가-취득가-합리적 비용)의 20% 세율.
- 증권양도: 건별 양도가액의 0.1% 세율.

2026년 7월 1일부터

- 양도 건별 과세소득에 대해 20% 세율 유지.
추가: 취득가 및 관련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→ **양도가액의 2%** 납부.
- 증권: 건별 양도가액의 0.1% 세율 그대로 유지.
신설: 2년 이상 보유한 적법한 개방형펀드 수익증권 양도 시 면세; 증권투자펀드·부동산투자펀드 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50% 감면(제5조 제4항, 제5항).

법적 근거: 04/2007/QH12호법 제13조, 제23조 — 109/2025/QH15호법 제13조, 제5조

상속·증여·당첨소득: 과세 기준 2배 인상

소득 항목(세율 동일)	구 기준	신 기준
당첨소득(10%)	건당 1,000만동 초과분	초과분: 2,000만 동/건
저작권료(5%)	계약당 1,000만동 초과분	초과분: 2,000만 동/계약
프랜차이즈 양도(5%)	계약당 1,000만동 초과분	초과분: 2,000만 동/계약
상속·증여 수령(10%)	건당 1,000만동 초과분	초과분: 2,000만 동/건

법적 근거: 04/2007/QH12호법 제15조~제18조 — 109/2025/QH15호법 제15조~제18조

디지털자산·골드바, 최초로 과세 대상 편입

신규 소득 항목(구 규정: 없음)	신규 계산 방식(제19조)
국가도메인 ".vn" 양도	건당 2,000만동 초과 소득의 5%
탄소배출 감축실적, 탄소배출권	건당 2,000만동 초과분의 5%(최초 1회 양도는 면세 — 제4조)
경매 낙찰 차량번호판	건당 2,000만동 초과 소득의 5%
디지털자산	0.1% 건별 양도가액 기준
골드바	0.1% 건별 양도가액 기준; 적용 기준 및 시행 시점은 금시장 관리 로드맵에 따라 정부가 정함

법적 근거: 109/2025/QH15호법 제3조 제10항, 제19조

2026 과세기간부터 면세 대상에 추가되는 소득 항목

개인기업/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의 소득

개인기업주 및 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의 법인세 차감 후 소득

첨단인력의 소득

개인소득세 면제 기간: **5년** 첨단기술 또는 전략기술 R&D에 참여하는 첨단인력의 급여·보수 소득에 대해 적용.

근로자의 소득

야간·초과근무 급여 및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급여·보수.

채권이자·녹색금융 소득

지방정부채권 이자; 그린본드 이자 및 최초 1회 양도; 탄소배출권·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최초 1회 양도

국제 전문가의 소득

ODA 전문가의 급여·보수, 베트남 주재 UN 대표기구 근무자 및 UN 평화유지군 참여자의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면제.

사회보험 소득

보충 퇴직연금기금이 지급하는 소득

법적 근거: 109/2025/QH15호법 제4조, 제5조

2026년 7월 1일 시행이나 급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재계산

규정(제29조)	실무적 의미
제1항: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.	건별로 발생하는 소득(지분양도, 부동산, 상속, 디지털자산 등)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신규정 적용.
제2항: 거주자의 사업소득, 급여·보수에 관한 규정은 2026 과세기간부터 적용.	2026년 전체 급여소득(상반기 포함)은 5단계 세율표로 정산하고, 새로운 공제액 1,550만/620만동을 적용. 사업활동 관련 소득도 2026년 초부터 적용.
제3항: 이에 상응하여 2007년 개인소득세법은 효력을 상실.	2026년 상반기 구 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2026년도 확정신고 시(2027년 초) 재산정되며,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.

법적 근거: 109/2025/QH15호법 제29조

문의하기

DEDICA의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언제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연락하시면 심층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기업 및 투자

|

상시 법률자문

|

분쟁 해결

형사 사건

|

인수합병(M&A)

|

상표 및 저작권



주소

호치민시 쑤언화동 하이바쯔거리 171번지 A&T 빌딩 11층



전화번호

+84 39 969 0012



이메일

david@dedica-law.com



웹사이트

www.dedica-law.com



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상담을 받아보세요.